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14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204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3. 31.
판 결 선 고	2017. 5. 12.

주 문

1. 피고가 2016.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2,423,720원, 지방교육세 2,747,280원, 농어촌특별세 3,434,100원, 재산세 629,650원, 지방교육세 125,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14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15. 상호를 'B',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 부산진구 C, 사업의 종류를 음식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그 무렵 위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합계 면적 727.50㎡을 건축하여 완공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7. 14. 자신의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5. 7. 22. 이 사건 음식점의 상호를 'D'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9. 이 사건 음식점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 제120조(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이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6. 8. 9. 원고에게 취득세 52,423,720원, 지방교육세 2,747,280원, 농어촌특별세 3,434,100원, 재산세 629,650원, 지방교육세 125,9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1.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이고 창업일부터 4년 내에 이 사건 부동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14

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감면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 창업중소기업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종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으로써 이 사건 음식점이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취득세의 면제 내지 재산세의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서 정하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61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관계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식점은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14

서 단순히 '음식점업'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6. 5. 29. 법률 제14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하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과 같이 음식점업에 일정한 제한이나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감면규정 내지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시행령의 규정을 명시적으로 준용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창업지원을 하도록 한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그 입법취지와 규율대상 등이 서로 다르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당연히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의 내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준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더군다나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11. 6. 8. 대통령령 제22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는 모든 음식점업에 대하여 창업지원에서 배제하는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모든 음식점업에 대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관계 법령에서 음식점업에 대하여 창업지원 대상 여부 및 취득세 면제대상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 사이에는 양자를 일관되게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라거나 이들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음을 찾을 수 없다.

④ 종래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11. 6. 8. 대통령령 제22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음식점업 전부를 창업지원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다가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으로 개정되면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에 대하여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14

창업지원 대상 업종으로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지닌 일부 음식점업에 대하여는 창업지원 대상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개정된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음식점업의 범위가 축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영표

판사 김용환

판사 엄지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14

별지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4. 음식점업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1조(재산세의 감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지방세 감면 축소·조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14

하였으나 이 법 시행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제22조제6항, 제34조, 제38조, 제41조제7항, 제42조제3항, 제46조,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8조, 제58조의3, 제59조, 제60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에 대한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에 따른 중과세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대한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에 따른 중과세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②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14

4. 음식점업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②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 또는 확인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6. 5. 29. 법률 제14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14

▣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11. 6. 8. 대통령령 제22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숙박 및 음식점업. 끝.